

주택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대한주택공사가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은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와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평가성적 및 격려장(경고장) 항목을 삭제하고, 100억원 이상공사 및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대비표

〈별표 1〉 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제1항 관련)

3. 추정가격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공사

현행					개정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시공경험 (15)					시공경험 (15)				
당해공사 공사 예정금액 대비 최근3년간 동일 한 업종별실적 누계액 비율	공사실적/ 공사예정금액	(6)	점수=실적계수×6 (단, 평점상한 6점) ※ 실적계수산식: 주1		당해공사 공사 예정금액 대비 최근3년간 동일 한 업종별실적 누계액 비율	공사실적/공 사예정금액	(8)	점수=실적계수×8 (단, 평점상한 8점) ※ 실적계수산식: 주1	
최근 3년간 실 질자본금 누계 액대비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 계액 비율	공사실적/ 자본금	(6)	A. 500%미만 B. 500% 이상~700%미만 C. 700% 이상~900%미만 D. 900% 이상	6.0 5.0 4.0 3.0	최근 3년간 실 질자본금 누계 액대비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 계액 비율	공사실적/ 자본금	(7)	A. 500%미만 B. 500% 이상~700%미만 C. 700% 이상~900%미만 D. 900% 이상	7.0 6.0 5.0 4.0
시공평가성적	입찰공고일 이 전 최근 2년간 주공에서의 시 공평가결과와 산술평균 점수	(3)	A. 90점이상 B. 90점미만-88점이상 C. 88점미만-86점이상 D. 86점미만-84점이상 E. 84점미만-80점이상 F. 80점미만	3.0 2.6 2.2 1.8 1.4 1.0	〈삭 제〉				
경영상태	〈생략〉	(15)	〈현행과 같음〉						

주택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현행					개정				
신인도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자 및 공동수급체에 동업체가 포함된 경우		(Δ2)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자 및 공동수급체에 동업체가 포함된 경우		(Δ2)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우리공사로부터 시공품질, 안전관리등과 관련, 경고장(Yellow Card) 또는 격려장(BLue Card)을 받은재(입찰공고일 현재 1년 이내)	(±0.5)	A. 경고장 발급 1회 B. 경고장 발급 2회이상 C. 격려장 발급 1회 D. 격려장 발급 2회이상	-0.25 -0.5 +0.25 +0.5	〈삭 제〉				
입찰가격	70	입찰가격 평점산식: 주2			입찰가격	70	입찰가격 평점산식: 주2		
당해공사수행능력결격여부					당해공사수행능력결격여부				
최근 1년 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Δ20)			최근 1년 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Δ20)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 점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Δ20)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Δ20)		
* 주 1.~2. 생략					* 주 1.~2. 〈현행과 같음〉				
3. 시공경험 가.~마. 8) 생략 마. 9) 기타공사: 관련법령상의 당해업종 실적으로 하되, 당해공사 관련협회 또는 발주자의 확인금액으로 함. 바.~사. 생략 아. 최근 2년간 우리공사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 시공평가성적은 C등급으로 평가.					3. 시공경험 가.~마. 8) 〈현행과 같음〉 마. 9) 기타공사: 관련법령상의 당해업종 실적으로 하되, 당해공사 관련협회 또는 발주자관련협회가 없는 경우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한함의 확인금액으로 함. 바.~사. 〈현행과 같음〉 아.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 및 소방 복합공종공사일 때에는 소방공사부문의 공사 실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주택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4.경영상태 가.~다. 생략 라. 평가처리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심사항목은 '0'점으로 처리 마.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인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업체는 심사항목별 최하등급으로 평가 바.~사. 생략	4.경영상태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업체평균비율이 (+)또는 (0)의 수치인 심사항목인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부(-)의 수치인 업체는 '0'으로 처리 마.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인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또는 (0)의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업체는 심사항목별 최하등급으로 평가 바.~사. <현행과 같음>

4. 추정가격 10억원미만공사

현 행					개 정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 점
시공경험 (8)					시공경험 (8)				
당해공사 공사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동일 한 업종별실적 누계액 비율	공사실적/ 공사예정금액	(6.4)	점수=실적계수×6.4 (단, 평점상한 6.4점, 평점하한 3.84점) ※ 실적계수산식: 주1		당해공사 공사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동일 한 업종별실적 누계액 비율	공사실적/공 사예정금액	(8)	점수=실적계수×8 (단, 평점상한 8점, 평점하한 4.8점) ※ 실적계수산식: 주1	
시공평가성적	입찰공고일이 전 최근 2년간 주공에서의 시 공평가결과의 산술평균 점수	(1.6)	A. 90점이상 B. 90점미만-88점이상 C. 88점미만-86점이상 D. 86점미만-84점이상 E. 84점미만-80점이상 F. 80점미만	1.6 1.5 1.4 1.3 1.2 1.0	<삭 제>				
경영상태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인도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 재기한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자 및 공동수급체에 동업체가 포함 된 경우		(△2)	<삭 제>						
시공업체로서 의 성실성	우리공사로부 터 시공품질, 안전관리등과 관련 경고장 (Yellow Card) 또는 격려장 (Blue Card) 을 받은 재입 찰공고일 현재 1년(이내)	(±0.5)	A. 경고장 발급 1회 B. 경고장 발급 1회이상 C. 격려장 발급 1회 D. 격려장 발급 2회이상	-0.25 -0.5 +0.25 +5	<삭 제>				

주택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현행				개정			
입찰가격		80	입찰가격 평점산식: 주2	입찰가격		80	입찰가격 평점산식: 주2
당해공사수행능력결격여부				당해공사수행능력결격여부			
최근 1년 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 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0)		최근 1년 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 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0)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 주 1.~3. 생략 4. 경영상태: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공사심사방법 적용. 단,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심사항목은 최하등급으로 평가하며, 추정가격 3억원미만공사인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만점을 부여				※ 주 1.~3. (현행과 같음) 4. 경영상태: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공사심사방법 적용. 단, 업체평균비율이 (+) 또는 (0)의 수치인 심사항목인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부(-)의 수치인 업체는 최하등급으로 평가하며, 추정가격 3억원미만공사인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만점을 부여			

- 부 칙 -

이 세부기준은 2000. 2. 7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건설기술자를 중복배치할 수 있는 공사규모

Q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의 규정중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공사」의 의미 및 「동일한 시·군과 제주도」에 있어서 거리규정이 있는지 여부

A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바, **귀절의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공사라 함은 2개의 공사예정금액이 각각 5억원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동일한 시·군과 제주도의 지역에 있어서의 거리규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